

2005. 4. 26.(화)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4. 12. 제 천 시 장
나. 회부일자 : 2005. 4. 14.
다. 상정일자 : 2005. 4. 18.(제111회 임시회 차지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가. 제안사유

- 신규체육시설인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고암 생활체육공원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 특수학교 및 초중고 체육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을 조례에 신설
- 신규 체육시설물 사용료 신설
- 특수학교 및 초중고 체육행사시 사용료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후준)

○ 신규 체육시설 현황

| 시설명 | 시설내역 | 재 원 현 황 | | | | 착공 | 준공 | 비고 |
|---------------|---|---------|-------|-------|-------|-------|-------|------------|
| | | 계 | 국 | 도 | 시 | | | |
| 하키장 | 31,340m ² 하키장 2면 (12,776m ²) | 5,200 | 1,100 | 2,050 | 2,050 | 03.01 | 04.05 | 청풍면 물태리 |
| 배드민턴 체육관 | 지상 2층 2,015m ² | 2,700 | 1,500 | 500 | 70 | 03.01 | 04.10 | 청전동 |
| 전천후 게 이트볼장 | 게이트볼장4면 1,824m ² , 지붕설치1면 684m ² | 764 | 0 | 0 | 764 | 03.02 | 04.12 | 청전동 |
| 고암생활 체육공원 | 테니스장2면 1295m ² , 축구장2면 780m ² , 풋살구장1면 1,100m ² 인라인 : 1,200m ² | 3,782 | 1,000 | 0 | 2,782 | 02.12 | 03.12 | 고암동 |

- 우리시는 최근 선수의 양성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등 새로운 체육시설을 완공하고 사용료징수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시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2조에 하키장등 새로운 시설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수영장은 '03년도에 용도폐지된 시설이며, 사격장도 근거가 불확실한 시설을 조례에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조와 금번 개정안에 제7항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시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사항중 체육행사의 범위등과 제13조 각항에 있어서 감액 징수하는 사항, 면제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과 제8항의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등은 반드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됨.

- 하키장을 1면만 사용할 경우와 2면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 하키장 사용등도 타 시군과 균형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의 하키장은 사용료수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신설해서 그런 건가 사용료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동수 위원)
- 관리운영에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경상 위원)
- 전국경기장중 양면을 갖고 있는 하키장이 우리 제천 한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최종섭 위원)
- 두개면을 다 사용했을 때와 하나만 사용했을 때에 대한 차등적 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 현재 야간경기 시설이 되어 있나요? (김진학 위원)
- 수영장하고 사격장을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상고에서 하키구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감면혜택이나 그런거 없이 똑같이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나. 답변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 경기장 사용이 체육경기 일때는 차이가 안나는데 체육경기외에 다른 행사를 하면 체육시설 보호 측면에서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임.
-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현 자료에는 면당 조정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개면을 사용신청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근거를 다음 기회에 마련하여 징수하겠습니다.
- 안되어 있습니다.
-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특수학교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2003년도에 용도폐지된 “수영장”과 근거가 불확실한 “사격장”을 삭제하고 하키장의 전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과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함.

7. 심사결과

- 유경상의원 수정안 발의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문대비표 1부. 끝.